12. 조사료생산 경영체 활성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 축 산	임진우	행)3723 일)220-3723

1. 목 적

○ 조사료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붐 조성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확대

○ 15ha이상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자체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사업 지원으로 경영체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생산성 증대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사업대상자

○ 조사료 생산 경영체 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경영체

- 평가 시기 : 2015년 하반기

4.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3개소	100,000 (100%)	21,000 (21%)	49,000 (49%)	30,000 (30%)	

5. 세부 지원계획

○ 1위 : 50백만원(도비 10.5, 시군비 24.5, 자담 15)

○ 2위 : 30백만원(도비 6.3, 시군비 14.7, 자담 9)

○ 3위 : 20백만원(도비 4.2, 시군비 9.8, 자담 6)

※ 기종 및 규격에 따라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시군비 또는 자부담으로 추가 부담 가능

6. 지원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의무량

○ 사용용도 : 조사료 수확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 의무량 : 조사료 수확 기계·장비 1식

7. 사업추진 요령

1 추진체계

○ 도

- 사업계획서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 조사료 수확 기계·장비 선택시 경영체 회원의견 수렴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종 선택토록 지도
-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시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 가능
-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하고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 시·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 조사료 수확 기계·장비 선택시 경영체 회원의견 수렴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종 선택
-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2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충청북도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에 철저

8. 행정사항

○ 보고사항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1>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서식 1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대상자 현황

○ 사업대상자 : ○○경영체(대표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추진 실적

장비명	제조업체명	수량	규격	제조번호	단가(천원)	사업비 집행(천원)								도비 집행 잔액(원)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집행잔액 발생사유 :

※ 관련 장비 사진첨부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축산	임진우	행)3723 일)220-372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5년 6,400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1% 달성

성과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2	'13	'14		
▪ 조사료 자급율(%)	91	84	87	90	2015.3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조사료 총공급량)×100
▪ 사료작물 재배면적(ha)	6,400	4,000	5,500	6,050	2015.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4. 2015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볏짚 처리비	조사료 경영체 장비	조사료 품질평가
사 업 량		4종	89천톤	종자 791톤 비닐 3,917롤	3개소	장비 1개소 인건비 8개소
사업비	합 계	7,559,000	5,333,000	1,560,000	450,000	216,000
	국 비	2,221,000	1,600,000	468,000	45,000	108,000
	도 비	1,220,100	960,000	187,200	40,500	32,400
	시군비	2,846,900	2,240,000	436,800	94,500	75,600
	융 자	135,000			135,000	
	자부담	1,136,000	533,000	468,000	135,000	

13-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에 의한 공급을 받는 경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농림축산식품사업실시규정 <별표 4>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체도 지원 가능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개별> : 본 요건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적용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 조합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 비용, 사일리지 사후관리 비용 등

4. 사 업 비 : 5,333백만원(기금 1,600, 도비 960, 시군비 2,240, 자담 533)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6.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10%

※ 자담 10%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일리지 제조경비(유류대, 비닐, 네트구입비 등) 지출증빙자료 첨부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 60천원/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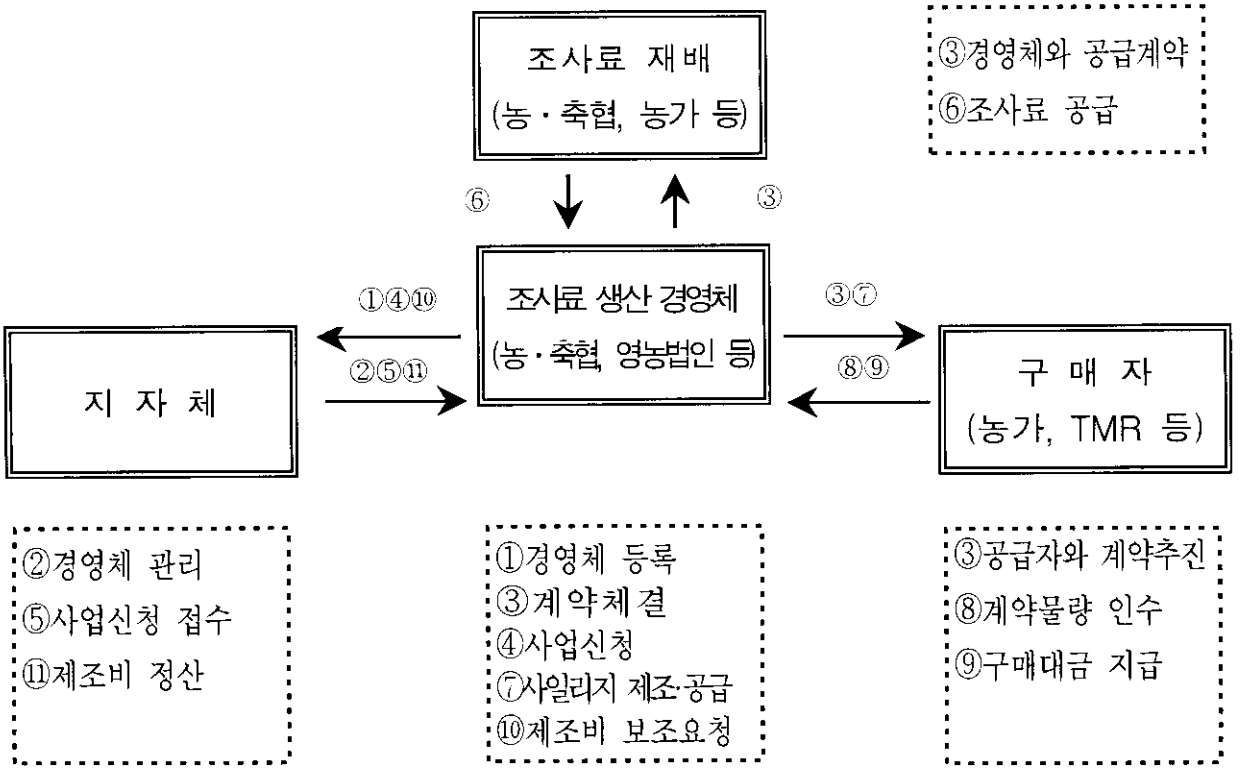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 추출하여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 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5%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14개, 3ha 작업을 하여 100개 제조한 경우 5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8. 기타 세부사항은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함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톤)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88,888**	**5,333,000**	**1,600,000**	**960,000**	**2,240,000**	**533,000**	
청주시	15,000	900,000	270,000	162,000	378,000	90,000	
충주시	17,707	1,062,330	318,700	191,220	446,180	106,230	
제천시	2,378	142,670	42,800	25,680	59,920	14,270	
보은군	18,384	1,102,980	331,000	198,600	463,400	109,980	
옥천군	11,112	666,670	200,000	120,000	280,000	66,670	
영동군	1,361	81,670	24,500	14,700	34,300	8,170	
증평군	1,111	66,670	20,000	12,000	28,000	6,670	
진천군	2,778	166,670	50,000	30,000	70,000	16,670	
괴산군	11,112	666,670	200,000	120,000	280,000	66,670	
음성군	7,778	466,670	140,000	84,000	196,000	46,670	
단양군	167	10,000	3,000	1,800	4,200	1,000	

13-2.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자 및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다만,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3. 지원대상

○ 종자대 : 옥수수, 청보리, 호밀,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목초종자

○ 볏짚처리비 :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

4. 사 업 비 : 1,560백만원(기금 468, 도비 187.2, 군비 436.8, 자담 468)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대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볏짚처리비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6.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30%

○ 볏짚처리비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 곤포 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7. 기타 세부사항은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에 의함

별 첨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톤, 롤, 천원)

구분	배정량 (톤, 롤)		예 산 액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종자(톤)	**791**	**1,560,000**	**468,000**	**187,200**	**436,800**	**468,000**
	비닐(롤)	**3,917**					
청주	종자(톤)	200	394,520	118,300	47,320	110,600	118,300
	비닐(롤)	994					
충주	종자(톤)	108	213,300	64,000	25,600	59,700	64,000
	비닐(롤)	533					
제천	종자(톤)	40	78,980	23,700	9,480	22,100	23,700
	비닐(롤)	200					
보은	종자(톤)	142	280,000	84,000	33,600	78,400	84,000
	비닐(롤)	706					
옥천	종자(톤)	55	108,300	32,500	13,000	30,300	32,500
	비닐(롤)	274					
영동	종자(톤)	14	27,620	8,300	3,320	7,700	8,300
	비닐(롤)	66					
증평	종자(톤)	18	36,020	10,800	4,320	10,100	10,800
	비닐(롤)	94					
진천	종자(톤)	55	108,300	32,500	13,000	30,300	32,500
	비닐(롤)	274					
괴산	종자(톤)	72	141,360	42,400	16,960	39,600	42,400
	비닐(롤)	357					
음성	종자(톤)	76	148,300	44,500	17,800	41,500	44,500
	비닐(롤)	357					
단양	종자(톤)	11	23,300	7,000	2,800	6,500	7,000
	비닐(롤)	62					

세부 사업별

(단위 : 톤, 롤, 천원)

구분	배정량 (톤, 롤)		예 산 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총 계		**1,560,000**	**468,000**	**187,200**	**436,800**	**468,000**
	종자(톤)	**791**	**1,226,666**	**368,000**	**147,200**	**343,460**	**368,000**
	비닐(롤)	**3,917**	**333,334**	**100,000**	**40,000**	**93,334**	**100,000**
청주	종자(톤)	200	309,666	92,900	37,160	86,706	92,900
	비닐(롤)	994	84,854	25,456	10,183	23,759	25,456
충주	종자(톤)	108	168,000	50,400	20,160	47,040	50,400
	비닐(롤)	533	45,300	13,590	5,436	12,684	13,590
제천	종자(톤)	40	62,000	18,600	7,440	17,360	18,600
	비닐(롤)	200	16,980	5,094	2,037	4,755	5,094
보은	종자(톤)	142	220,000	66,000	26,400	61,600	66,000
	비닐(롤)	706	60,000	18,000	7,200	16,800	18,000
옥천	종자(톤)	55	85,000	25,500	10,200	23,800	25,500
	비닐(롤)	274	23,300	6,990	2,796	6,524	6,990
영동	종자(톤)	14	22,000	6,600	2,640	6,160	6,600
	비닐(롤)	66	5,620	1,686	674	1,574	1,686
증평	종자(톤)	18	28,000	8,400	3,360	7,840	8,400
	비닐(롤)	94	8,020	2,406	962	2,246	2,406
진천	종자(톤)	55	85,000	25,500	10,200	23,800	25,500
	비닐(롤)	274	23,300	6,990	2,796	6,524	6,990
괴산	종자(톤)	72	111,000	33,300	13,320	31,080	33,300
	비닐(롤)	357	30,360	9,108	3,644	8,500	9,108
음성	종자(톤)	76	118,000	35,400	14,160	33,040	35,400
	비닐(롤)	357	30,300	9,090	3,636	8,484	9,090
단양	종자(톤)	11	18,000	5,400	2,160	5,040	5,400
	비닐(롤)	62	5,300	1,590	636	1,484	1,590

13-3.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1. 사업대상자

○ 조사료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3. **사 업 량** : 보조지원(3개소), 융자지원(미정)

4. **사 업 비** : 787.5백만원(기금 45, 도비 40.5, 시군비 94.5, 융자 405, 자담 202.5)

○ 보조지원 : 450백만원(기금 45, 도비 40.5, 시군비 94.5, 융자 135, 자담 135)

○ 융자지원 : 337.5백만원(융자 270, 자담 67.5)

5. 지원형태

○ 보조지원율 : 기금 1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담 30%

○ 융자지원율 : 융자 8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가격 준용.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경영체에 보조지원

7. 기타 세부사항은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에 의함

별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 (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융자	자담	
계	**3**	**450,000**	**45,000**	**40,500**	**94,500**	**405,000**	**202,500**	
청주시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충주시								
제천시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보은군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미내시						270,000	67,500	

※ 지원받은지 5년 경과된 부속장비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없이 추가 지원 가능

13-4. 조사료 품질평가

1. 사업목적

○ 국가단위 조사료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품질평가·분석

2. 사업대상자

○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 시·군 농업기술센터(미정), 6개 시·군

3. 사 업 량 : 8개소

4. 사 업 비 : 216백만원(기금 108, 도비 32.4, 시군비 75.6)

5. 지원형태

○ 지원비율 :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품질검사 분석장비 구입비

- 지원단가 : 87,000천원/대
- 검사장비 :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및 부속장비

○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검사보조원)

- 지원단가 : 12,500천원/년(1인 × 50,000원/일 × 250일)

○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

- 지원단가 : 3,600천원/년(개소당)
- 계근, 시료채취, 품질검사, 인건비, 검사소모품, 시료운송비, 검량식 유지관리비 등

7. 기타 세부사항은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함

별첨

시군별 사업내역

구 분	지원 구분	사업량 (개소)	예 산 액(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8**	**216,000**	**108,000**	**38,070**	**69,930**	**0**
종축 시험장	검사인력	1	16,200	8,100	8,100	0	
청주시	검사인력	1	16,100	8,050	2,415	5,635	
충주시	검사인력	1	16,100	8,050	2,415	5,635	
제천시							
보은군	검사인력	1	16,100	8,050	2,415	5,635	
옥천군	검사인력	1	16,100	8,050	2,415	5,635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검사인력	1	16,100	8,050	2,415	5,635	
음성군	검사인력	1	16,100	8,050	2,415	5,635	
단양군							
미내시	분석장비 검사인력	1	103,200	51,600	15,480	36,120	

13-5. 조사료 가공시설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사업량 및 사업비 : '15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신청한 업체 중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자 선정결과에 의거 지원

- 지원계획 : 사업확정시 사업량 및 사업비 별도 통보계획

3. 사업내용

○ 신규지원 : 조사료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및 시설 건축비 등

○ 보완지원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TMR 가공시설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4. 지원비율

○ 신규 및 보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 이내(총사업비 18천만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6. 기타 세부사항은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함

13-6.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1. 사업대상자

○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조사료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조사료 생산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조사료를 유통

3. 지원대상

○ 조사료(사일리지) 저장시설, 소포장 제조설비,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 계근시설, 방역시설, 사무시설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9억원 이내(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기준)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8. 기타 세부사항은 '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에 의함

14.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자체)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축산	최동수	행)3722 일)220-3722

1. 목 적

○ 조사료 가공장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사료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TMR 사료공장의 경영정상화 도모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

3.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천시, 보은군

○ 사업기간 : 2015. 1~12월

○ 사업내용 : 기계·장비 개보수, 창고 등 지원(화물차량은 지원 제외)

※ 소독시설이 없는 업체는 사료공장 출입구에 고정식(터널식) 소독시설 의무설치

4.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제천·단양축협섬유질사료공장, 보은 낙농영농조합법인

5. 지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지원단가 : 개소별 단가적용

7. 사업량 및 사업비

시 군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100%)	도 비 (18%)	시군비 (42%)	자 담 (40%)	
계	2	300,000	54,000	126,000	120,000	
제천시	1	150,000	27,000	63,000	60,000	
보은군	1	150,000	27,000	63,000	60,000	

8. 세부추진요령

1 추진체계

○ 도

- 기본계획 수립 시달 및 지도감독 등 제반사항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 수립 추진, 분기별 1회이상 사업추진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2 세부 추진요령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사업계획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계획수립 시행 : 사업신청에 의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행

○ 기계·장비는 1년이상 A/S 가능한 기종을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정산 및 검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 실적 제출시 당초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 및 자부담 포함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 무통장입금확인 등)를 확인(징구)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은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되 초과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 부당사항 적발시 사업비 지원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조치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군수

○ 보조금은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회수 조치

9.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군수가 변경·승인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실시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 적용

○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서 보고<서식 1> : 2015. 2. 28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서식 1

조사료 가공 시설 보완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 사업자현황

○ 생산자단체명(대표자,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조사료 가공장 이용호수 및 생산량

- 이용호수 : 호
- 생 산 량 : 톤/월

□ 세부시설 투자계획

세부시설명	규격	수량	투자계획(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서식 2

조사료 가공 시설 보완 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자현황

○ 생산자단체명(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시설명	규격	수량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도비 집행 잔액 (원)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집행잔액 발생사유 :

※ 사진첨부

축산물안전팀

1. 소 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변정운	행)3732 일)220-37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이력정보 기록·관리로 추적시스템 구축

○ 소의 질병 및 쇠고기 위생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

○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 도모

2. 근거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비	합 계	746	738	716	716
	국 비	373	369	358	358
	도 비	112	111	107	107
	시군비	261	258	251	25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9개 위탁기관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쇠고기 이력제 관리를 위한 귀표부착비

3. 지원비율

○ 귀표부착비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위탁기관 부착 시 : 9,300원/두

- 자가부착농가 부착 시 : 6,560원/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귀표부착비 : 지급대상기간 '14.12.1 ~ '15.11.30

5. 사업량 및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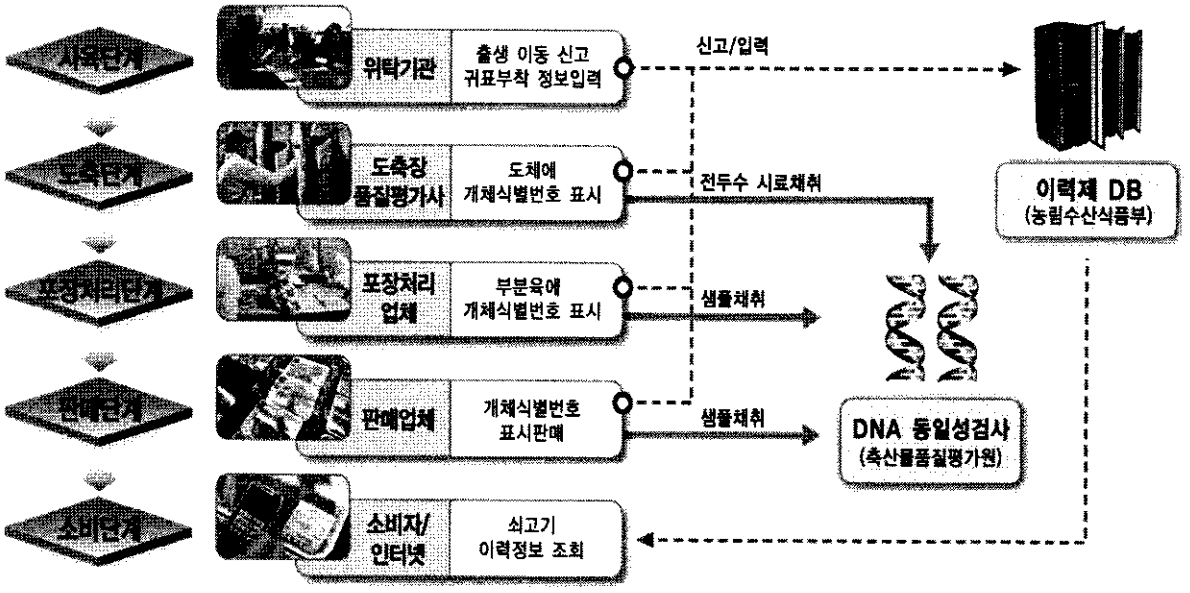
○ 사업량 : 77,020두

○ 사업비 : 716,286천원(국비 358,143, 도비 107,443, 시·군비 250,700)

- 시군별 사업내역 : (별표 1) 참조

6. 사업내용

【 쇠고기 이력제 추진체계 】



①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
  -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서면 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업무 위탁 수행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신고한 농가를 위탁기관에서 방문하여 30일 이내 귀표 부착(육우의 경우 7일)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시 도축금지
- 검사관의 위생검사 합격여부와 등급판정 결과 등 즉시 입력

③ 가공단계

○ 식육포장처리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거래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장부에 5일 이내 기록 보관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장에서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⑤ 소비단계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안심장보기 어플 이용)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 공개

7. 행정사항

○ 지급대상기간이 '14.12.1~'15.11.30일 귀표를 부착한 실적임에 유의

○ 보고 및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 2015. 1. 10(붙임 1)
-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붙임 2)
- 사업완료 보고 : '16. 1. 20(붙임 3)
- 관할지역의 귀표부착, 사육단계 이력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 업무 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체계 구축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위탁기관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은 즉시 회수 조치
- 식육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이력제 이행상황을 수시 지도·단속하고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적극 추진
- 돼지고기 이력제 점검도 병행 추진

《붙임 1》

사업 계획서

1. 보조사업자명 : ○○시·군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14.12.3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15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젖소	계	한우	육우	젖소

* 귀표부착 대상두수는 가임암소의 출산율(한우 75%, 젖소 68%)을 고려, 산출

나. '14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14.12.3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15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15년 DNA동일성 검사량(축산위생연구소)

검사기관별	'15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젖소	

3. 사업추진계획

○ 위탁기관별 귀표부착·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내시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체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붙임 2》

쇠고기 이력제 추진 실적

□ 도축장 교육 및 단속 실적

도축장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 식육포장처리업소 교육 및 단속 실적

포장처리 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 소 매매 중개상과 수집상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우시장		중개상, 수집상			처분실적(건)	
개소수	점검횟수	상인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 중개상, 수집상은 시군별로 파악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분기별 정기검사대상농가 등

□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처분실적(건)			
횟수	인원	점검 농가수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 위탁기관 교육, 점검 및 처분내역

위탁기관				처분내역
기관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점검횟수	
				예) 30일이내 귀표 미부착 00건 적발

□ 시·도별 「쇠고기 이력제 운영협의회」 운영 실적

○ 운영협의회 운영실적 : 회

○ 주요내용

□ 기타 실적

《붙임 3》

쇠고기이력제 정산 내역 보고서식

(단위 : 두, 원)

시군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77,020**	**716,286**	**358,143**	**107,443**	**250,700**	
청주	22,100	205,530	102,765	30,830	71,935	
충주	8,400	78,120	39,060	11,718	27,342	
제천	5,400	50,220	25,110	7,533	17,577	
보은	9,600	89,280	44,640	13,392	31,248	
옥천	6,000	55,800	27,900	8,370	19,530	
영동	3,600	33,480	16,740	5,022	11,718	
증평	1,700	15,810	7,905	2,371	5,534	
진천	5,000	46,500	23,250	6,975	16,275	
괴산	6,000	55,800	27,900	8,370	19,530	
음성	7,800	72,540	36,270	10,881	25,389	
단양	1,420	13,206	6,603	1,981	4,622	

2. 축산종합지도(HACCP)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변정운	행)3732 일)220-37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2015년 HACCP컨설팅 지원사업지침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비	합 계	528	560	320	288
	국 비	211	224	128	115
	도 비	48	50	29	26
	시군비	111	118	67	61
	자 담	158	168	96	86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염소, 산양, 면양, 사슴)와 축산물영업자(집유업에 한함)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

- 소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 (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메추리 포함)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염소·산양·면양 및 사슴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400두 이상인 농가(사슴은 200두 이상인 농가)
-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하고, 1회입란 능력이 30만이상인 부화장
- 집유업 : 제한 없음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HACCP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HACCP 적용시 비용지원

4.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5. 지원기준

○ 지원단가 : 8,000천원/개소

6.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36개소

○ 사업비 : 288,000천원(국비 115,000, 도비 25,920, 시·군비 60,480, 자담 84,400)

- 시·군별 사업내역 : (별표 1) 참조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 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8.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 완료시점은 농가(업체)가 HACCP 지정 신청을 하는 시점까지임

9. 보고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15. 1. 20 <서식 3>

○ 계약 체결 사황 보고 : '15. 3. 20 <서식 4>

○ 정산 보고 : '16. 1. 20 <서식 5>

10. 컨설팅업체 운영지침

① 컨설팅 계약의 체결

○ 계약은 <붙임 1> 표준계약서(안)에 따라 컨설팅업체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업체)가 체결한다.

- 계약서에는 <서식 1>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컨설팅업체는 체결된 계약서(수행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하여 농장(업체)와 컨설팅업체에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시군에 제출한다.

② 컨설팅의 수행

○ 컨설팅업체 등록지침상의 컨설팅 등록분야별로「축산물 HACCP 컨설팅 주요내용」을 농장(업체)의 실정에 적합하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방문지도는 컨설팅 연간 수행기간 동안에 농가(업체)별 10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컨설팅은 연간컨설팅수행계획<서식 1>에 따라 수행하고, 붙임<서식 2>의 컨설팅업무수행일지에 그 수행 내용을 기록하며, 컨설팅계약서, 연간컨설팅수행계획 및 업무수행일지를 농가(업체)와 컨설팅 등록업체에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 컨설팅 업체는 사업추진 이후(계약 후) 컨설팅 대상 농가(영업장)에 대한 HACCP 컨설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1회 시·군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결과 보고시에는 주요 컨설팅 내용, 생산성 등 지표의 변화(농가에 한함), 개선사항, HACCP 인증신청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③ 컨설팅 완료 후 HACCP 지정신청 및 사후관리

○ 컨설팅업체는 농가(업체)의 컨설팅이 완료되면 HACCP 기준원에 HACCP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HACCP기준원의 HACCP 지정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컨설팅을 3회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컨설팅 업체는 농가(업체) HACCP지정 이후에도 HACCP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년도 HACCP기준원(시·도)의 조사·평가시까지 사후관리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 농식품부는 농가(업체) 컨설팅이 완료된 경우 HACCP 지정·조사평가 등 컨설팅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업체 평가 및 정책에 활용한다.

○ 컨설팅 업체별 HACCP 인증비율 분석 결과를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컨설팅 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한다.

⑤ 컨설팅 지도 점검

○ 사업주관인 시·군는 사업대상 농가·영업장 및 컨설팅업체가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분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하야야 한다.

⑥ 컨설팅업체(컨설턴트 포함)의 위반사항 제제조치

○ 시장·군수는 컨설팅추진 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인 농업인·영업자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금을 컨설팅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

○ 컨설팅업체가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 관련 보고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 참여 제한

○ 컨설팅 업체가 농가(업체) 모집을 위해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컨설팅 보조금을 타용도 사용 등 부당하게 컨설팅 예산을 사용한 경우, 또는 컨설팅업체가 특정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 즉시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컨설팅 업체 등록은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등록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 경우 제제조치는 컨설팅 업체와 해당 컨설턴트에게 함께 적용한다.

※ 컨설팅 예산 부당편취, 자부담 허위납부 등이 발견될 경우 컨설팅업체와 해당농가(업체)를 함께 고발조치한다.

○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출장 등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 컨설팅 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컨설팅 업체를 타 컨설팅업체로 교체할 수 있다.

<붙임 1>

축산물 HACCP컨설팅 표준 계약서(안)

농가·업체(이하 "갑"이라 칭함")와 컨설팅업체(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HACC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명 : HACCP 컨설팅
2. 계약내용 : HACCP 지정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일체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HACCP 지정신청 시까지(사후관리 포함)
5. 계약금액 : ₩ 8,000,000원 : 총 금액
   ₩ 2,400,000원 : 계약시 및 사업진도에 따른 지급(자부담 30% 우선지급)
   ₩ 5,600,000원 : 시도(시군구)에서 사업진도에 따라 지급(농식품부·지자체 보조금)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2014년 월 일

농가·업체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컨설팅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첨 부)

HACCP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의 (농장 또는 업체)에 대한 HACCP 지정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컨설팅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 (을)이 진단한 작업여건에 관한 지도 및 보완사항의 이행
- (을)이 요구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을"이 보유한 컨설턴트가 현업 확인 · 분석 · 진단, 교육, 이행권고,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지시 등을 실시한다.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첨부)에 따라 "갑"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2.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사육농가)

- 차단방역, 농장시설 및 관리기준, 위생관리, 사료 · 동물용의약품 · 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착유 · 알 관리 등

3.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가공, 포장처리, 판매, 보관, 운반 및 집유업체)

4.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5. 기타 HACCP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조 : 컨설팅에 따른 교육

계획된 일정에 의해 컨설턴트 및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HACCP 지정신청을 위해 "갑"의 농장주·영업자 등 해당인원은 축산물HACCP 교육기관의 HACCP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은 컨설팅 기간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은 "을"의 원할한 컨설팅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의 HACCP 컨설팅 사업시행지침, 조치사항, 지시 및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 8조 : HACCP 책임자 지정

HACCP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 및 향후 HACCP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갑의 대표자나 직원 중 HACCP 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제 9조 :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시 부터 "갑"의 (농장 또는 업체) HACCP 지정신청 시 까지로 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시도(시군구)에 이를 보고한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파업, 공장폐쇄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해당시도(시군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 14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5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시군구)에 제출한다.

<서식 1>

연간 HACCP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

년월일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서식 2>

(앞 쪽)

HACCP컨설팅 업무수행일지[서식]

2015년 월 일

컨설팅 업체명 : 컨설팅 수행자 : (인)

일반사항			
컨설팅 농가업체명			
컨설팅 일시		컨설팅 장소	
컨설팅 수행항목			
컨설팅 수행자(명단)			
농가업체 참석자(명단)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뒷 쪽)

업무 수행사항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기 타		

<서식 3>

HACCP컨설팅 대상업소 선정 보고

시 군	사업대상자			축종/업소	사육두수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폰/집)			

<서식 4>

HACCP컨설팅 계약체결 상황 보고

시군	컨설팅 계약업체명	사업대상자		축종/ 업소	계약 일자	착수일자 (자부담입금일)	비고
		성명	주소				

<서식 5>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사업 정산

(단위 : 개소, 천원)

시군	사업계획						사업실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	자담

<서식 6>

HACCP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 총괄현황

(단위 개소)

세부축종(업종)	사업량	컨설팅 계약체결	사업완료 (지정신청)	HACCP 지정	이월	불용	비고
한우							
젖소							
…							
합계							

□ 세부내역

시군	구분	세부업종	농장명 (업소명)	소재지	사육두수 (영업장 면적)	대표자명	컨설팅업체 (컨설턴트)	계약일	완료일	비고
	브랜드경영체	소(한우)					△△컨설팅 (홍길동)			'12.9.6 완료
		소(젖소)								'13년 이월
		돼지								
	일반	닭(산란계)								
		닭(육계)								
		닭(종계)								
		집유업								
		…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36**	**288,000**	**115,200**	**25,920**	**60,480**	**86,400**	
청주	8	64,000	25,600	5,760	13,440	19,200	
충주	4	32,000	12,800	2,880	6,720	9,600	
제천	1	8,000	3,200	720	1,680	2,400	
보은	2	16,000	6,400	1,440	3,360	4,800	
옥천	5	40,000	16,000	3,600	8,400	12,000	
영동	4	32,000	12,800	2,880	6,720	9,600	
증평	1	8,000	3,200	720	1,680	2,400	
진천	5	40,000	16,000	3,600	8,400	12,000	
괴산	1	8,000	3,200	720	1,680	2,400	
음성	3	24,000	9,600	2,160	5,040	7,200	
단양	2	16,000	6,400	1,440	3,360	4,800	

3. 축산물작업장 HACCP 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변정운	행)3732 일)220-37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2015년 HACCP컨설팅 지원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가내시)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비	합 계	-	-	92	96
	국 비	-	-	37	38
	도 비	-	-	8	9
	시군비	-	-	19	20
	자 담	-	-	28	29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보관·운반업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HACCP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HACCP 적용시 비용지원

3. 지원비율

○ 지원비율 : 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4. 지원기준(지원단가)

○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운반·보관업 : 8,000천원/개소

5.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2개소

○ 사업비 : 96,000천원(국비 38,400, 도비 8,640, 시·군비 20,160, 자담 28,800)

- 가공업소 12개소 × 8,000천원
- 시·군별 사업내역 : (별표 1, 2) 참조

6. 축산물 HACCP컨설팅 주요내용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

○ 영업장의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7. 보고사항 :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사업 서식 참조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 : '15. 1. 20

○ 계약 체결 사황 보고 : '15. 3. 20

○ 정산보고 : '16. 1. 20

9. 컨설팅업체 운영지침 :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사업 참조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계	**12**	**96,000**	**38,400**	**8,640**	**20,160**	**28,800**	
청주	4	32,000	12,800	2,880	6,720	9,600	
충주	2	16,000	6,400	1,440	3,360	4,800	
제천	1	8,000	3,200	720	1,680	2,400	
보은	-	-	-	-	-	-	
옥천	-	-	-	-	-	-	
영동	-	-	-	-	-	-	
증평	-	-	-	-	-	-	
진천	2	16,000	6,400	1,440	3,360	4,800	
괴산	-	-	-	-	-	-	
음성	3	24,000	9,600	2,160	5,040	7,200	
단양	-	-	-	-	-	-	

4.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주영훈	행)3733 일)220-37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근절로 먹거리 안전성 제고

○ 폐사소(牛)의 적정처리로 농가 불법매립 방지 및 애로사항 해소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안전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비	합 계	200	220	300	350
	국비 도비	60	66	90	105
	시군비	140	154	210	245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축산농가

2. 자금의 사용 용도

○ 폐사소(牛) 랜더링(열처리) 또는 이동·매립장 처리비용

3.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4. 지원대상

○ 소 및 쇠고기 위탁관리 기관에 출생 신고되고,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되어 처리가 필요한 소

예) 일반질병,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

5. 사업기간

○ '15. 1 ~12월

6. 지원기준, 용도, 한도액

○ 지원기준 : 4개월 이상 사육된 소(육성우)

○ 지원한도 : 250천원/두

- 한도 초과시 자부담 또는 시·군비로 충당하여 적의 추진

○ 지원용도 : 폐사소(牛) 랜더링(열처리) 또는 이동·매립장 처리비용

※ 단, 가축불법매립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군의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7. 세부추진요령

○ 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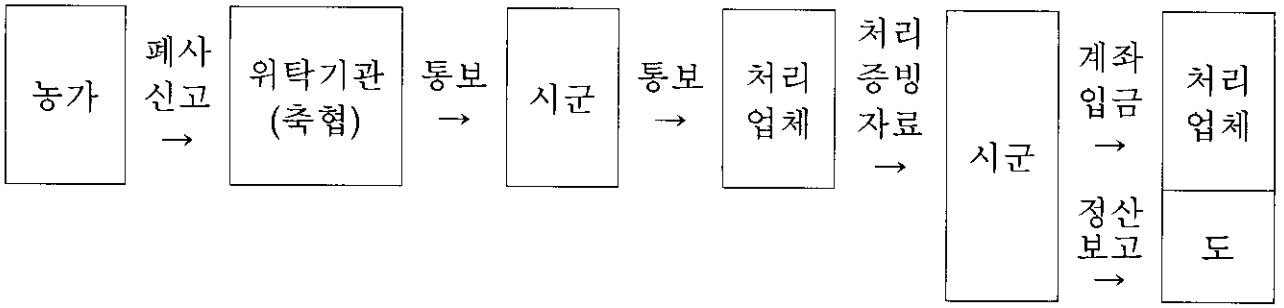
○ 협조기관 : 농협충북지역본부 및 9개 이력제 위탁기관

○ 시·군별 지원내역 : (별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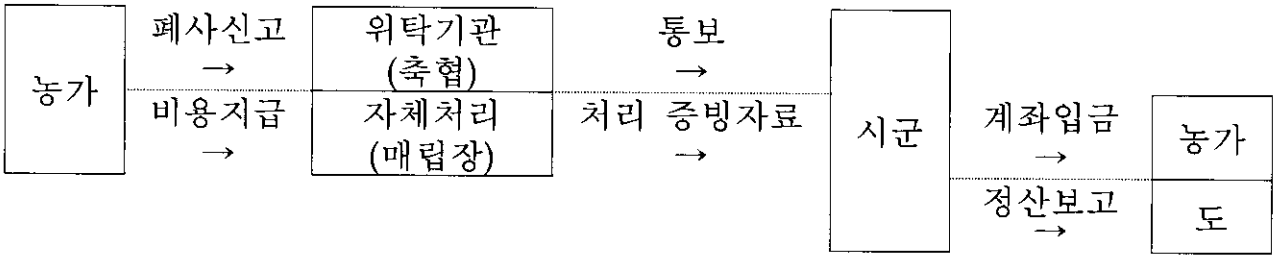
○ 세부요령

1 추진체계

○ 랜더링(열처리) 처리할 경우



○ 랜더링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2 기관별 역할

○ 도

- 사업계획 시달 및 추진 총괄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농가 홍보
- 신고접수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 1588-4060)
- 처리 증빙자료 확인 및 처리상황 수시 지도·감독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 농가

- 폐사 소 발생시 신고
- 자체 처리시 증빙자료(사진, 영수증 등) 제출

○ 지역축협(위탁처리기관)

- 폐사 소 발생시 신고 접수 및 전산시스템 입력
- 폐사 소 신고 접수시 시군에 통보

○ 랜더링 처리업체

- 폐사 소 열처리 및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3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

-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군비 부담비율을 준수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비 부족시 농가 자부담 또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 가능

○ 랜더링업체 및 농가의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하여 자금집행

○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가능

4 행정사항

○ 추진실적은 매 익월 5일한 보고, 해당사항만 기재 〈서식 1〉

○ 사업비 정산은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 〈서식 1〉

○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벌칙규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홍보 강화

○ 폐사 소의 처리는 랜더링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랜더링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가급적 시군 자체 매립장내 매립토록 협조

<서식 1>

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

< 시·군>

(단위 : 두, 천원)

구 분		도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시군비	처리두수
			계	도비	시군비			
계 획								
실적	랜더링							
	매립장							
	계							
누계	랜더링							
	매립장							
	계							

<서식 2>

폐사소 처리내역 보고

번호	성명	주소	축종	이력번호	월령	폐사 원인	처리비용
1	홍길동	청주시 내수읍	한우	000000000	25	관리소홀	250,000
2							
3							
4							
5							
6							
7							
8							
9							
10							

별표 1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계	**1,400**	**350,000**	**105,000**	**245,000**	
청주	490	122,500	36,750	85,750	
충주	160	40,000	12,000	28,000	
제천	20	5,000	1,500	3,500	
보은	80	20,000	6,000	14,000	
옥천	70	17,500	5,250	12,250	
영동	20	5,000	1,500	3,500	
증평	40	10,000	3,000	7,000	
진천	230	57,500	17,250	40,250	
괴산	110	27,500	8,250	19,250	
음성	160	40,000	12,000	28,000	
단양	20	5,000	1,500	3,500	

5. 충북 축산물브랜드 전시홍보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변정운	행)3732 일)220-3732

1. 목 적

○ 충북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기회 제공

○ 브랜드경영체 · 유통업체 · 소비자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운영

2. 추진방향

○ 도내의 우수 브랜드 축산물 홍보 및 소비

- 전시·시식회, 할인판매,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소비촉진 활성화

○ 브랜드업체의 판로확충

- 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행사참여로 참가업체 발전방안 모색
- 신규 브랜드업체의 "홍보의 장"마련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 가축질병 또는 수급 불안정으로 축산물 가격하락시 소비촉진 운동 전개

3. 행사개요

○ 기 간 : 2015. 1 ~ 12월중

○ 주최/주관 : 충북농협지역본부

○ 협 조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육우 · 낙농육우 · 양돈 · 양계 · 오리 · 양봉 · 흑염소(협회), 소비자단체 · 등급판정소 등

○ 소요예산 : 40,000천원(도비)

○ 참여대상 : 충북 브랜드 축산물에 한함(타도 브랜드 제외)

- 식육(한 · 육우, 돼지, 염소, 닭, 오리), 가공품(식육, 乳, 알), 양봉 등

○ 참여자격

- 도내 축산농가가 생산한 브랜드 축산물
- 도내 업체에서 생산된 식육 · 유(乳) · 알가공품 등

4. 행사내용 : 세부 추진계획 추후통보

○ 축산물 가격하락 등 여건을 고려, 브랜드전 · 품목별 직거래장터 등 개최

5. 홍보계획

○ 행사안내 : 신문, 전광판, 도 홈페이지, 포스터, 초청장 등

6. 전국 우수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변정운	행)3732 일)220-3732

1. 목 적

○ 고품질·안전 충북 브랜드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

○ 성공사례 벤치마킹의 장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파워 브랜드 육성

2. 추진방향

○ 소비자 및 유통업체에 충북 축산물브랜드 전국단위 홍보로 판매 촉진

3. 행사개요

○ 일　　시 : 2015. 9~10월중

○ 장　　소 : 미정(농축산식품부 시달)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　　관 : 농협중앙회

○ 행사내용 : 브랜드 축산물 전시, 판매, 무료시식 등 홍보

※ 행사 세부추진계획은 추후통보

4.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축산물 생산·유통기반이 우리도(道)에 소재한 브랜드 경영체, 가공업체, 친환경 축산물생산법인의 우수브랜드 축산물
- 식육(한·육우, 돼지, 닭, 오리), 가공품(식육, 乳, 알), 양봉 등

○ 지원내용

- 소요예산 : 27,000천원(도비)
- 참가업체 부스설치비, 홍보물 등 지원

5.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지역특화 우수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7. 축산기업조합 지육운반차량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김정태	행)3731 일)220-37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지육운반차량(냉장탑차) 지원으로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 냉장탑차 공동운영으로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소규모 식육판매점 경영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3. 성과목표 및 지표

○ 영세 식육판매점 냉장탑차 공동이용으로 경영안전 및 안전축산물 공급

○ 지육운반차량 지원으로 관련규정 준수 유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 업 량		-	-	-	1대
사업비	합 계	-	-	-	30
	도 비	-	-	-	9
	시군비	-	-	-	12
	자부담	-	-	-	9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청주시장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육운반차량(냉장탑차) 구입비용 지원

3. 지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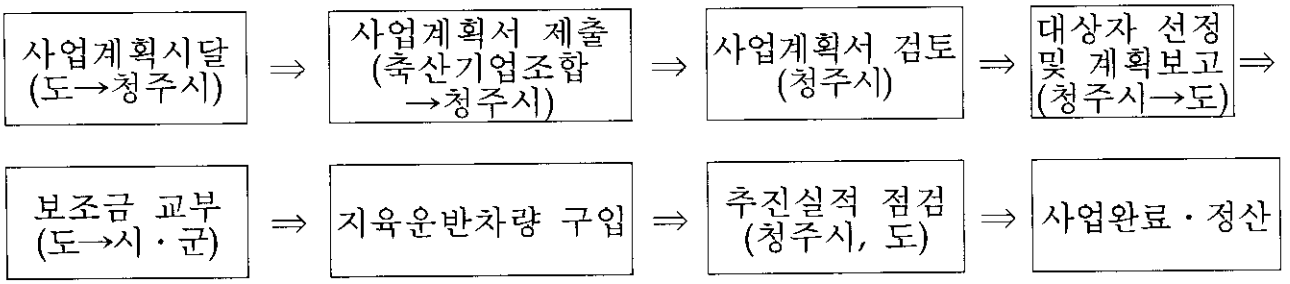
○ 도비 30%, 시·군비 40%, 자담 30%

4. 사업량 및 사업비

○ 1대, 30백만원(도비 9, 시·군비 12, 자담 9)

5.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 **세부요령**

- 기본계획 수립

· 청주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지육운반차량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후 사업추진

- 사업 추진요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운반업에서 정하는 시설을 준수

○ 자금집행 및 정산

- 청주시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실시

○ 사후관리

- 청주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지육운반차량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도록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보조금 교부일로부터) :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 법적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 청주시장의 승인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6. 행정사항

○ 사업추진 중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정 또는 자금회수 조치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상자 선정 : 2015. 2. 28일까지

○ 사업완료·정산보고 : 2016. 1. 20일까지 〈서식 1〉

〈서식 1〉

사업완료·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자 :

○ 소 재 지 :

○ 사업예산 :

○ 구입내역 : 운반차량 종류, 규격, 제조번호 등

□ 자금집행 및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계 획				실 적				잔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지육운반 차량												

8.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주영훈	행)3733 일)220-3733

1. 목 적

○ 부정축산물 유통근절로 소비자 건강 증진

○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건전한 축산업 발전기여

2. 사업개요

○ 점검반 편성 : 2인 1조 편성 운영

- 시군은 자체실정과 인력을 감안하여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점검시기

- 특별점검 : 육류성수기(설날, 추석, 하절기 등)
- 수시점검 : 식육유통질서 확립 및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 주요 점검사항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 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여부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준수 여부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원산지 표시 등)
-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감시
  - 유통·판매단계의 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여부
  - 검사증명서(수입식육은 신고필증), 거래내역서 작성 보관 여부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원산지 구분 판매의 적정성 여부
- 국제행사 납품업체 감시 강화

3. 사업시행요령 : 2015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4. 행정사항

○ 중복단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HACCP 점검시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병행

-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위생감시점검표에 의거 점검 후 도에 보고

○ 무허가·허위표시 제품 등에 대하여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

○ 위반제품이 타 시·도 허가품목인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축산물가공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 가공실 실내온도가 15℃이내 유지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 축산물가공업 허가 여부	
	○ 품목제조보고(변경) 여부	
	○ ①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 ②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보관(2년) 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 여부 등 조사	
	○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 여부	
	○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검사(매월 1회) 실시·보관(2년) 여부 *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검역검사본부 고시 참조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성 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영업자 및 자가검사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영(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쇠고기 원산지 및 이력제 관련 사항	

2015.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원료 및 식육포장처리실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작업실내의 환기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 가능토록 온도 조절 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보관(2년)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여부 - 보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사전에 영업허가 기관(시·군·구청)에 보고 여부 -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유효기간·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상)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 쇠고기 원산지 및 이력제 관련 사항	

2015.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축산물판매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이하 온도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신고 여부	
	○ 무허가·무신고 제품 진열·판매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의 진열·판매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여부	
	○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여부	
	○ 부위별·등급별·국내산의 구분(한우·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산 구분 판매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월 1시간 이상)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 쇠고기 원산지 및 이력제 관련 사항	

2015.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식용란 포장	◦ 소매단위(1~30개) 또는 벌크(300개 이하)로 포장 여부	
	◦ 최소포장단위에 생산농장과 산란일이 같은 계란포장 여부	
식용란의 개별표시기준	**<최소포장단위 표시사항>**	
	◦ 유통기한 표시여부	
	◦ 생산자명(소유자명 또는 생산농장명) 표시여부	
	◦ 판매자명 및 소재지 표시여부	
	◦ 제품명 표시여부	
	◦ 내용량(개수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중량 표시) 표시여부	
	◦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 표시여부	
	◦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시여부	
	<난각(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 생산자명(소유자명 또는 생산농장명) 표시여부	
	◦ 또는 생산자명 기호표시(해당하는 경우)방법 준수 여부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 HACCP 미지정 업체의 HACCP 마크 사용 등	
	◦ 계란 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품질평가원 발급)와 대조하여 등급표시 일치 여부	
	◦ 법 32조 관련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	
기타	◦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부패란 등 비정상적인 란의 보관·판매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식용란 거래내역서 작성·보관(6개월 이상)여부	

2015.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9.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지급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축산물안전	주영훈	행)3733 일)220-3733

1. 목적

○ 부정축산물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다만, 제1항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 내지 제4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소 5두이상 밀도살 신고자등에 대한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으로 한다.

3. 포상금 지급절차

○ 지급대상 : 부정축산물을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

○ 신청시기 :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이후 신청

○ 구비서류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결정 증빙서류(공소장 사본 등)
-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
- 확인서, 경위서 등 관련서류

4. 비밀의 보장

○ 행정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식 1>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도 :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 :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범법행위유형	수량
	행위연월일	행위장소
	조치사항	
	포상금액	
포상금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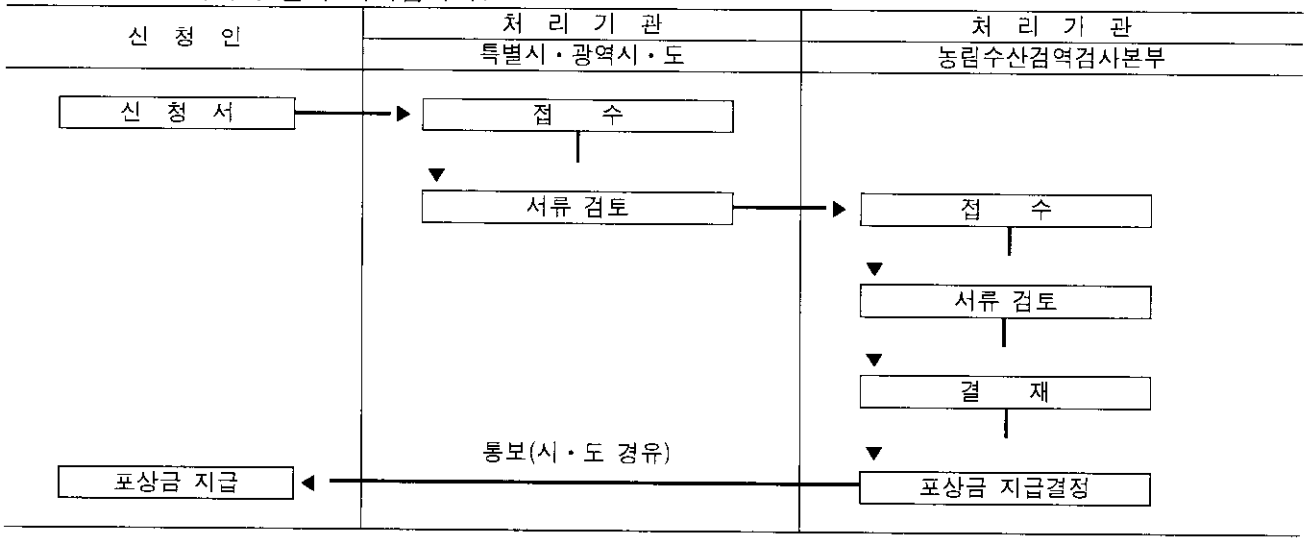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제2조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100만원 미만	5만원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00만원 미만	5만원
	1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30만원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이상	10만원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100만원 미만	10만원
	100~300만원 미만	20만원
	300~500만원 미만	30만원
	500만원 이상	50만원

주) 위 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임

동물방역팀

1.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덕순	행)3742 일)220-37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근절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근절추진으로 도민보건위생 향상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15년 농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98,207천건	7,307,639	3,128,486	-	1,957,153	2,222,000

○ 지원단가 : '15년 농축산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준함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2. 지원대상 : 축산농가

○ '15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예방백신, 축종별, 접종시기별 사업 대상자 선정

○ 동물복지 인증농가 우선지원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예방주사(14종) : 구제역(전업농, 영세농), 탄저·기종저 등

○ 기생충구제(3종) : 꿀벌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 지원단가 : '15년 농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준함

5. 세부 추진요령 : 시군별 사업물량 및 시행요령 별도 시달

6. 행정사항

○ 제품선정 : 관계기관 방역협의회 개최 후 선정

- 협의회 구성 : 방역본부, 수의사회, 지역 축협, 축종별 협회 등

○ 약품공급 : 정부 조달계약 단가에 의거 사업계획 물량 구입 후, 우선접종대상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배부

- 시·군 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및 실명제 담당자를 통하여 공급

○ 예방접종여부 확인 : 농가별 방역일지 확인(시군 공수의사, 실명제 담당자)

○ 기타 세부사항 : '15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준함

※ 지원제외 :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받은 농가

7.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보고서식>

( )분기 가축방역 실적보고

1. 가축예방약 공급 실적

축종	종류별	연간계획 (A)	당분기 공급		누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계	종					

2. 기생충 구제 약품

축종	종류별	연간계획 (A)	당분기 공급		누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계	종					

□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시군비	자담
계												

※ 세부사업별 정산서식은 추후 통보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천두, 천수,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시·군비	자 담	
계	**98,207**	**7,307,639**	**3,128,486**	**1,957,153**	**2,222,000**	
청주시	28,378	1,312,641	601,142	373,099	338,400	
충주시	18,873	944,110	406,195	262,315	275,600	
제천시	2,917	376,713	166,736	95,577	114,400	
보은군	12,903	438,374	217,132	131,642	89,600	
옥천군	3,689	260,771	126,868	69,103	64,800	
영동군	3,167	278,401	122,755	71,246	84,400	
증평군	1,604	230,851	94,486	60,365	76,000	
진천군	5,384	1,469,369	566,109	380,460	522,800	
괴산군	5,647	826,875	340,662	210,613	275,600	
음성군	14,319	1,064,893	438,024	275,269	351,600	
단양군	1,326	104,641	48,377	27,464	28,800	

※ 조달수수료 미반영 사업예산으로 추후 배정 예정임(1회 추경에 반영)

2.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덕순	행)3742 일)220-37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육우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소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15년 농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92,900두	650,300 (100%)	195,090 (30%)	-	455,210 (70%)	-

○ 지원단가 : 7,000원/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2. 지원대상

○ 농장 사육 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발생농장 재검사, 농가 의뢰검사 등 브루셀라병 검사에 동원된 채혈요원(공수의사 등)

※ 검사증명서 및 휴대제와 관련된 채혈은 방역본부가 전담 추진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년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채혈비 지급

5. 세부 추진계획 : 시군별 사업물량 및 시행요령 별도 시달

6. 행정사항

○ 보고사항 : 정산보고(서식 1)

○ 연간 채혈물량 등을 감안하여 채혈요원 적정 편성·운영

○ 검진실적 집계시 농장 내 사육 소 일부를 검사 후, 연내 같은 농장을 다시 검사할 경우 검진 농가수에 추가하지 말 것(검진두수만 추가)

○ 한·육우 사육농가 홍보 강화

-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 · 모든 농장의 1세 이상의 한·육우 암소
  - ·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 자연교배용 수소·소 수집상·중개상 사육 소
  - · 육성 전문 젖소농가 암소 등
  - · 채혈요원의 채혈시 농가가 보정하도록 지도(한우협회 협조)

※ 검사증명서 휴대제 위반자 과태료 처분

- 사람 브루셀라증 감염예방을 위한 축산업 관련 종사자 준수사항
  - · 유산태아 및 후산물 등 취급 후, 손·의복 등 소독
  - · 관할 보건소에 발생농장 관계자의 사람 감염여부 진단 의뢰
  - · 살균처리 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7. 자금집행

○ 시·도가축방역비 교부(농식품부) →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교부결정 및 교부(도) →

채혈·보정 요원별로 실적에 따라 채혈·보정비 지급(시·군)

8.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계	국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시군비
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시·군비	자 담	
계	**92,900**	**650,300**	**195,090**	**455,210**		
청주시	25,400	177,800	53,340	124,460		
충주시	10,200	71,400	21,420	49,980		
제천시	7,300	51,100	15,330	35,770		
보은군	11,900	83,300	24,990	58,310		
옥천군	7,800	54,600	16,380	38,220		
영동군	4,200	29,400	8,820	20,580		
증평군	1,900	13,300	3,990	9,310		
진천군	5,100	35,700	10,710	24,990		
괴산군	7,600	53,200	15,960	37,240		
음성군	9,800	68,600	20,580	48,020		
단양군	1,700	11,900	3,570	8,330		

3.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재승	행)3743 일)220-37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으로, 돼지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손실예방 및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15년 농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10호	100,000 (100%)	30,000 (30%)	-	30,000 (30%)	40,000 (40%)

○ 지원단가 : 10,000천원/호

○ 지원비율(연차적으로 상이)

- 1 ~ 2년차 :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3년차 : 국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4년차 : 국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
- 5년차부터 컨설팅 비용 전액 자부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사업대상 : 컨설팅 공급업체·농가

3. 지원대상 : '1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양돈농가

※ 농업경영컨설팅 및 HACCP 지도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제외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소모성질환 피해 감소를 위한 질병·사양·환기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비용 지원

※지원제외 : 시설·장비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

6. 세부 추진계획 : 시군별 사업물량 및 시행요령 별도 시달

7. 행정사항

○ '15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준함

○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자 발생시 반드시 사업대상자 포기서 제출

-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후순위자로 하되 해당시군 사업량에 한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가능

8.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추진실적 보고사항

-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 : 2015. 7.10(별지 제6호 서식)
- 컨설팅 최종결과 보고 : 2016. 1.15(별지 제7호 서식)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컨 설 팅 추 진 상 황 보 고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명		컨설팅대상 농가명	
책임컨설턴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육 규 모		양 돈 경 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 용	내 용	중간성과	문 제 점

개선실적* (개선실적은 아래양식에 맞춰 작성)	기 술지 표 (컨설팅초기)	개 선 목 표	개 선 실 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붙임 : 세부 컨설팅 추진결과 1 부.

* 개선실적

구 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중간점검 (6개월경과)
모돈회전율 모돈두당 년간 산자수(PSY) 이유일령 이유시 평균체중 (kg) 사료효율 폐사율 출하일령 평균 출하체중 (kg) 모돈 두당 년간 출하두수(MSY)			
방역위생비(원/ 출하두당)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 농가 (인)

[별지 제7호서식]

컨 설 팅 최 종 결 과 보 고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 자문단	○ 책임 컨설턴트 : (분야) ○ 컨설턴트 : (분야) ○ 컨설턴트 : (분야)	컨설팅 농가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 약 내 용			

주요컨설팅 내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개선목표	개선실적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붙임 : 세부 컨설팅 추진결과 1 부.

* 개선실적

구 분	컨설팅 시점	개선목표	최종점검 (컨설팅 종료시)
모돈회전율			
모돈두당 년간 산자수(PSY)			
이유일령			
이유시 평균체중 (kg)			
사료효율			
폐사율			
출하일령			
평균 출하체중 (kg)			
모돈 두당 년간 출하두수(MSY)			
방역위생비(원/ 출하두당)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컨설팅 자문단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농가 (인)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시·군비	자 담	
계	**10**	**100,000**	**30,000**	**30,000**	**40,000**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사업대상자 확정후 시군별 사업비 내시(각 시군 1회 추경에 계상)

4.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덕순	행)3742 일)220-37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관련 차량 등록 의무제 시행('12.8.23)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체계 구축 필요

○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조기에 당해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조치 실시로 확산 방지 노력

2. 근거법령

○ '15년 농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3,840대	228,096 (100%)	114,048 (50%)	34,214 (15%)	79,834 (35%)	

○ 지원단가 : 4,950원/월/12개월, * 자부담 4,950원/월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지원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중 시·군에 등록을 완료한 차량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축산관계시설>

- 가축시설(300㎡ 이하농장 출입하는 차량은 제외)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장
-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 축산차량 등록은 사용지에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록방법 및 절차 등>

- '12년 축산차량등록제 시행계획(축산과-16472, 2012. 9.28)

<벌칙>

- 차량출입정보 목적외 사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 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군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차량의 기기 임대료 및 통신료 지원

5. **세부 추진계획** : 시군별 사업물량 및 시행요령 별도 시달

6.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축산차량등록제 정산보고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840**	**228,096**	**114,048**	**34,214**	**79,834**	
청주시	740	43,956	21,978	6,593	15,385	
충주시	550	32,670	16,335	4,901	11,434	
제천시	240	14,256	7,128	2,138	4,990	
보은군	400	23,760	11,880	3,564	8,316	
옥천군	400	23,760	11,880	3,564	8,316	
영동군	150	8,910	4,455	1,336	3,119	
증평군	140	8,316	4,158	1,247	2,911	
진천군	300	17,820	8,910	2,673	6,237	
괴산군	250	14,850	7,425	2,228	5,197	
음성군	600	35,640	17,820	5,346	12,474	
단양군	70	4,158	2,079	624	1,455	

※ 사업비는 시·군에서 등록한 등록대수에 따라 추후 증감 예정

5.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황준영	행)3744 일)220-37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법정관리기간(3년)이 경과한 매몰지의 관측정, 유공관 등의 시설을 제거하고 봉분을 평탄화 하여 타 용도로 사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및 악취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2. 근거법령

○ '15년 농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82개소	492,000 (100%)	246,000 (50%)	-	246,000 (50%)	

○ 지원단가 : 6,000천원 내외/매몰지 개소당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지원기준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한 가축매몰지

3. 사업기간 : '15.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 매몰지 환경정리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시군별 사업비 배정 한도액 내에서 매몰지 정비내역에 따라 지원단가 내외로 집행 가능)

- 세부실시요령은 추후 시달

5. 행정사항

○ 사후관리 대상 매몰지 선정보고 : 2015년 5월

- 3년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농식품부, 2013) 및 가축매몰지 환경조사지침(환경부, 2013) 준용

6.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가축 매몰지 현황 보고(관리기한 연장 또는 종료로 구분)

시군	관리번호	주소	축종	규모	비고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비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계	국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시군비
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2**	**492,000**	**246,000**	**-**	**246,000**	
청주시	10	60,000	30,000	-	30,000	
충주시	11	66,000	33,000	-	33,000	
제천시	-	-	-	-	-	
보은군	-	-	-	-	-	
옥천군	-	-	-	-	-	
영동군	-	-	-	-	-	
증평군	5	30,000	15,000	-	15,000	
진천군	16	96,000	48,000	-	48,000	
괴산군	14	84,000	42,000	-	42,000	
음성군	26	156,000	78,000	-	78,000	
단양군	-	-	-	-	-	

참고자료 1. <농식품부> 3년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3년 경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3년경과 가축매몰지
(전국 : 4,799 개소/충북 229개소)

환경 오염 우려 있는 매몰지

선 정 기 준

○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우려가 높은 매몰지

○ 환경영향조사 대상이 아닌 매몰지의 경우 관련규정(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등)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영향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매몰지

사 후 관 리

○ 발굴금지 및 관리기간(3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발굴금지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환경 오염 우려 없는 매몰지

○ **발굴없이 타용도로 사용시**
- 관련장비 제거 및 소독처리 후 사용

○ **발굴 후 타용도로 사용시**
- 잔존물 없는 경우 : 관련장비 제거 및 소독처리 후 사용
- 잔존물 있는 경우 : 관련 지침에 따른 검사 및 이설 후 사용

○ **친환경 처리한 시설**
- 잔존물 유무에 따라 "발굴 후 타용도로 사용시"를 준용

참고자료 2. <환경부>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지침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지침

3년경과 조사기간 연장
(반기별 1회 조사, 2년 이상 실시)

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수질조사

선 정 기 준

○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별표]에 의하여 1단계 조치(지속관찰 단계포함)가 요구되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의 경우
○ 매몰장소가 하천, 수원지 등과 30m 이내인 곳
○ 매몰지 굴착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는 곳(매몰장소가 지하수 수위로부터 1m 이내인 곳)
○ 음용지하수관정과 이격거리가 75m 이내인 곳
○ 그밖에 매몰지가 대규모 또는 밀집된 곳,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 등으로서 시·군·구의 장이 환경영향이 우려되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측정

선 정 기 준

○ 가축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별표]에 의하여 1단계 조치(지속관찰 단계 포함)가 요구되는 매몰지의 관측정인 경우

○ 매몰지가 대규모 또는 밀집된 곳,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 등으로서 시·군·구의 장이 환경영향이 우려되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살처분 보상금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재승	행)3743 일)220-37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농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에 대한 보상

○ 감수성 동물 살처분으로 가축전염병 조기근절 도모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동법 제21조(도태의 권고), 동법 제48조(보상금)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농축산식품부 고시)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농축산식품부 고시)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발생 최소화	4,375,000 (100%)	3,500,000 (80%)	-	875,000 (2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보상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또는 도태 대상 가축 및 기립불능우로 판정되고 BSE 검사 시료를 채취한 소

○ 검사·주사·주사표시·약품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실시로 죽거나 부상,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살처분 대상 전염병>

-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제2종 가축전염병 : 브루세라병, 결핵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인플루엔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스크래피,

'13.10.7일 시행 : 소 해면상뇌증, 가금티프스, 추백리

<도태권고 대상 전염병>

- 제1종 가축전염병 : 구제역, 돼지열병 동거축
- 제2종 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오제스키병 동거축, 가금티프스, 추백리 동거축
- 기타 : 구제역 NSP 항체 양성축

< 도축금지 기립불능우 및 검사휴유증(폐사, 부상, 유사산축)>

4. 세부 추진요령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시군)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보상금 평가액 산정 및 관련 서류 제출 (시·군 → 도)

평가액 산정 적정서 확인 및 보상금 지급 승인 (도 → 시군) → 보상금 지급 (시·군 → 농가)

※ 신속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상금 추정액의 50%까지 선지급

※ 기타 세부사항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에 준함(농축산식품부 고시)
- '15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추후 시달

5.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살처분 보상금 정산보고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두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두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두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 살처분, 도태, 기립불능우로 구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	**4,375,000**	**3,500,000**		**875,000**	
청주시		675,000	540,000		135,000	
충주시		500,000	400,000		100,000	
제천시		500,000	400,000		100,000	
보은군		625,000	500,000		125,000	
옥천군		350,000	280,000		70,000	
영동군		500,000	400,000		100,000	
증평군		75,000	60,000		15,000	
진천군		350,000	280,000		70,000	
괴산군		375,000	300,000		75,000	
음성군		375,000	300,000		75,000	
단양군		50,000	40,000		10,000	

※ 사업비는 시·군 살처분·도태 가축두수에 따라 추후 증감 예정

7.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덕순	행)3742 일)220-37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일제소독 효과를 높이고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재발방지 추진

○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축산농가에서 일제 소독 실시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15년 농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3. '15년 지원계획

○ 공동방제단 인건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28개반	555,800 (100%)	277,900 (50%)	55,580 (10%)	222,320 (40%)	

※ 시군별 지원내역 : 별첨 1

○ 공동방제단 운영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28개반	524,518 (100%)	262,259 (50%)		262,259 (50%)	

※ 시군별 지원내역 : 별첨 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및 농(축)협 28개 공동방제단

2. 지원대상

○ '15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및 농(축)협 28개반 운영

- 지원기준

  소·사슴·염소 10두미만, 돼지 500두미만, 닭 500~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동방제단 인건비 : 농(축)협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

- 28개반 인건비 지원(연간 19,850천원 한도/명)

○ 공동방제단 운영비 : 농(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제반비용

-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지원

5. 세부 추진 및 행정사항

○ '15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준하여 보고

6.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공동방제단 인건비·운영비 정산보고

(단위 : 반,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보고 : 매월 익월 5일 이내

○ 보고체계 : 축협 → 시·군 → 도 → 농식품부

○ 시·군별 방제단 소독실적 보고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SYSTEM)에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보고서식(Excel 작성 제출)

(단위 : 호,명,천ℓ)

시 군	대상농가수	축협명	00 월 공동방제단 소독실적				비 고
			방제단 운영	방역요원명	소독농가수	소독약 사용	

7. 공동방제단사업 실태 및 농가 소독실태 점검

<도>

○ 점검계획 : 별도 계획 수립 추후 시달

○ 시·군별 현장점검 책임자 지정 운영

- 시·군별 현장점검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별 2~3개 시군 점검
- 시군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10개소 이상/1회) 점검

○ 주요점검 사항

- 방제단별 방역요원과 예산의 지급상황 등 실태 점검
- 농가의 소독실시기록부 적성여부 확인
- 가축시장, 도축장, 축분비료공장 등에 소독 및 장비실태 점검

<시·군>

○ 방제단 별로 대상농가 2개이상을 무작위로 방문 소독실태 점검

- 소독실시기록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방제단의 비용집행 점검

<공통>

○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소독실시 기록부 미기록 및 미비치) 및 시설 미 운영농가, 업체 등은 확인서를 징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 방제단 운영장비 및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 축협에 대하여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이상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1항제2호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50	200	500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300	500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300	500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200	500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200	500
□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100	200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200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50	300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50	150	300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100	150	200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100	150	200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0	100	300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50	100	100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50	100	200

○ 소독대상별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 등

구 분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		확인 주체	
		설 비	실시기준	1차	2차
농장 (시설 면적)	300㎡미만	-	주1회 이상	시·군	시·도
	300~999㎡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 발판소독조 ◦농장출입구 차량소독시설(터널식·고정식 시설 또는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동력분무기) ◦소독약 보관·희석탱크 및 고압분무기	주1회 이상		
	1000㎡이상	◦상기 설비외 출입자의 옷과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소독시설 추가	주1회 이상		
축산 관련 시설	공통	◦시설출입구 차량소독시설(터널고정식) ◦소독약 보관·희석탱크 및 고압분무기	-		
	도축장	◦공통시설외 가축·식육차량 세차·소독시설(동파방지장치) 및 발판소독조 -가금류 도축장은 수송용기 세척·소독시설	시설 : 주1회 이상 차량 : 출입시	시·도	농림부
	집유·사료·축분공장	◦공통시설외 차량 세척·소독시설 또는 2대 이상의 동력고압세척기 및 발판소독조	시설 : 주1회 이상 차량 : 출입시	시·군	시·도
	종축장·부화장	◦공통시설외 발판소독조 -종축장 : 샤워실 등, 2대이상 고압분무기 -부화장 :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알·난좌 소독시설	·종축장 : 주 1회 이상 ·부화장 : 부화 전후	시·군	시·도
	가축시장·검정기관	◦공통시설외 출입구 발판소독조 및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 집합전 및 집합후	농협	시·도
가축원유약품 사료가축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농가	시·군

주) ① 소독 후 소독실시기록부(또는 농협제작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에 기록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② 농장의 경우 출입차량 운전자가 차량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장주(관리인)가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 고발조치

< 별지 제1호서식 >

소규모 농가 명단 현황

☐ 마을단위 : 시·군 읍면 리

☐ 소규모 농가 명단 및 현황

일련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비 고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두								
계											

※ 가급적 축종별 단위로 구분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소독약품 수불대장

□ 공급 및 수령일자 :　　년　월　일

□ 공급기간 및 수령기관

○ 공급기관 :

○ 수령기관 :

□ 약품명 및 수량

○ 약품명 :　　,　　리터

□ 수불내역

일련번호	축협명	팀명	농가수(호)	소독약 원액(ℓ)	희석 비율(000배)	소독약 희석액(ℓ)	수령확인		비고
							성명	서명	

< 별지 제3호서식 > - 소독실시 후 방역요원이 기록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 설 명		대 표 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 재 지	(전화 :)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 독 실시자	비 고

< 별지 제4호서식 >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대장

☐ 소독 일자 :　　년　월　일

☐ 소속 실시자 :

구 성	축협명(주소 및 연락처)	성명	확인(서명)
단 장			
소독요원			
소독요원			

☐ 소독지역 :　　시·군　　읍·면　　리

☐ 소독 내역

일련번호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사육가축 및 두수								농가확인 (서 명)
			한육우	젖소	사슴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두								
		리 번지									
계											

< 별지 제5호서식 >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급대장

□ 시·군명 :

□ 축 협 명 :　　작성자 :　　(인)

지급일	수령자	지급 금액	담당 지역	농가수	소독 횟수	차량 번호	확인 (서명)

별첨 1

공동방제단 인건비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반,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계	**28**	**555,800**	**277,900**	**55,580**	**222,320**	
청주시	5	99,250	49,625	9,925	39,700	
충주시	3	59,550	29,775	5,955	23,820	
제천시	3	59,550	29,775	5,955	23,820	
보은군	3	59,550	29,775	5,955	23,820	
옥천군	3	59,550	29,775	5,955	23,820	
영동군	2	39,700	19,850	3,970	15,880	
증평군	1	19,850	9,925	1,985	7,940	
진천군	2	39,700	19,850	3,970	15,880	
괴산군	2	39,700	19,850	3,970	15,880	
음성군	2	39,700	19,850	3,970	15,880	
단양군	2	39,700	19,850	3,970	15,880	

별첨 2

공동방제단 운영비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반,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계	**28**	**524,518**	**262,259**		**262,259**	
청주시	5	95,041	47,520		47,521	
충주시	3	62,262	31,131		31,131	
제천시	3	55,516	27,758		27,758	
보은군	3	57,183	28,592		28,591	
옥천군	3	54,210	27,105		27,105	
영동군	2	33,432	16,716		16,716	
증평군	1	17,405	8,703		8,702	
진천군	2	35,572	17,786		17,786	
괴산군	2	40,250	20,125		20,125	
음성군	2	38,764	19,382		19,382	
단양군	2	34,883	17,441		17,442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운영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덕순	행)3742 일)220-3742

○ 민간 방역기관 기능 활성화를 통해 민·관 공동방역체계 확립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 구제역, 브루셀라병 등 5대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1. 사업개요

○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위해 방역업무의 일부 부담

○ 주요사업

- 가축질병예찰 및 농장채혈
  - ▪ 구제역,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검사용 시료 채취
-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소독·교육·홍보 및 전화예찰(월 2회 이상)
- 양축농가 방역실태 점검 : 농장 시료채취 및 순회점검 방문(연 5회)

2.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21명	725,000 (100%)	435,000 (60%)	290,000 (40%)	-	

○ 지원내용 : 21명 인건비/12개월분

3. **사업주관** : 도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 **지원대상** : 가축위생방역지원충북도본부 가축방역사 21명

5. **사업기간** : '15. 1 ~ 12월

6. **행정사항** : '15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준함

○ 분기별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실적을 분기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

○ 보조금 교부 추진체계

-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농식품부, 분기별)
  → 보조금 교부신청(방역본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 보조금 집행(방역본부) → 정산보고(방역본부)

○ '15년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 '15. 1. 31일

7.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집행실적 보고(/4분기)

(단위 : 명,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배정				당분기 배정				집행누계			
	명	계	기금	도비	명	계	기금	도비	명	계	국비	기금
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명	계	기금	도비	명	계	기금	도비	명	계	기금	도비
계												

9. 소독약품 등 구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재승	행)3743 일)220-37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구제역·AI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강화

○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시기 집중 소독·관리로 질병발생 사전 예방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48톤	600,000 (100%)	-	180,000 (30%)	420,000 (70%)	

○ 지원단가 : 구제역·AI 소독약품 등 48,000kg×12,500원=600,000천원

※ 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지원대상

○ 축산농가 : 각종 방역 및 시책교육 참여농가 우선지원

3.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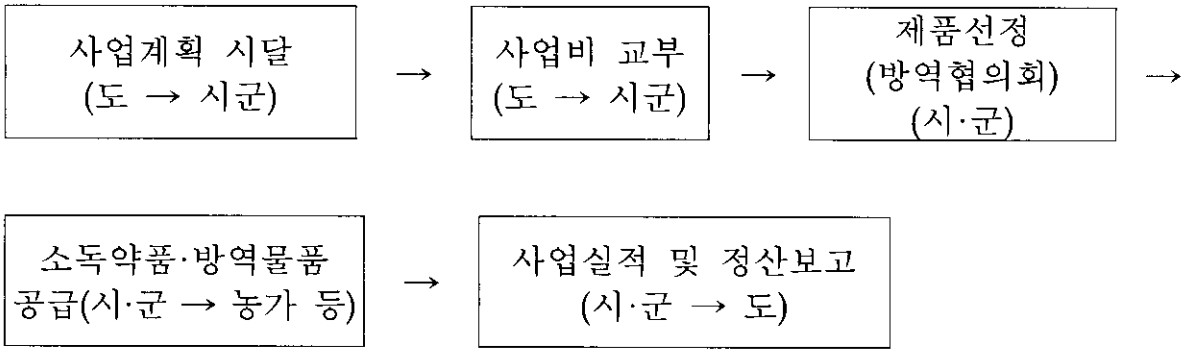
○ 사업기간 : '15.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악성전염병 발생시 초동방역을 위한 소독약 등 방역물품 공급

○ 유사시를 대비한 소독약품 비축

5. 세부실시요령



〈 도 〉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총괄 지도 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소독 이행 실태 도·시군 합동점검

〈 시 · 군 〉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대상 농가 선정

○ 제품선정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후 선정

-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의 구제역·AI 등 방역에 유효한 허가 소독제 선정
- 협의회 개최시 사용방법, 약제특성 등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 자문 활용
- 소독약품은 3개월이내 또는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제품 구입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1~5월, 10~12월)중 집중 배부

○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토록 적극 배려

○ 유사시 대비 약품 및 소모품 비축

○ 소독 이행 실태 수시 점검

○ 방역물품공급 후 대장작성 보관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 농 가 〉

○ 소독약품 수령 후 소독실시대장 기록 철저

○ 소독약품 성분확인 및 사용방법 숙지 등 소독효과 거양

6.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소독약품 집행실적 정산보고

(단위 : kg,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계												

□ 농가별 소독약품 공급대장

일련번호	농가 내역			공급 물품(kg, ℓ, 벌 등)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	소독약품	생석회	방역복	기타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kg,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계	**48,000**	**600,000**	**180,000**	**420,000**	**0**	
청주시	10,000	125,000	37,500	87,500		
충주시	6,000	75,000	22,500	52,500		
제천시	4,400	55,000	16,500	38,500		
보은군	6,000	75,000	22,500	52,500		
옥천군	4,600	57,500	17,250	40,250		
영동군	2,400	30,000	9,000	21,000		
증평군	1,400	17,500	5,250	12,250		
진천군	3,000	37,500	11,250	26,250		
괴산군	4,400	55,000	16,500	38,500		
음성군	4,200	52,500	15,750	36,750		
단양군	1,600	20,000	6,000	14,000		

10.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덕순	행)3742 일)220-37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유·사산 및 유량저하 등 부작용 예방

○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기구지원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5종	972,000 (100%)	-	291,600 (30%)	680,400 (7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지원대상

○ 구제역 예방접종 축산농가(소, 돼지, 염소, 사슴)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 사업목적 : 구제역 예방접종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유사산·유량저하 등에 유효한 스트레스 완화제, 유산 방지제, 대사촉진제 등 지원

○ 우선배정기준

- 한·육우 : 임신우 및 6개월 미만 송아지
- 젖　소 : 착유우 전두수 및 송아지
- 돼　지 : 분만예정 모돈 및 자돈 우선지원(주사용 혼합제)
- 염소·사슴 : 분만 예정축

○ 공급시기 : 수시 및 일제접종시 공급

○ 배부방법 : 농가 직접수령 또는 예방접종반 공급

○ 예방접종 방법 : 미지근하게 데우고 잘 흔들어줌, 1두 1침 사용 및 천천히 주입하고 서서히 빼낼것

○ 제품선정 :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로 승인된 조달제품

※ FMD 접종전후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입증 제품도 구입 가능

- 기타 구제역 예방접종 후 야기될 수 있는 해열·진통·스트레스 등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제 등

○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후 대장작성 보관

나.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및 포획비 지원

○ 예방접종 시술비

- 지원내용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및 염소·사슴 농가에 대해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경우 시술비 지원

※ 비수의사 또는 자가 접종 시 지원 불가, 방역규정 미이행 수의사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4,000원/두

○ 염소 포획비

- 지원내용 : 염소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하고, 포획비 지원

※ 시·군 승인없이 구성된 포획단에 대해서는 포획비 지원 불가

- 대상농가 : 예산범위내에서 소규모 고령농가 우선 선정
- 지원단가 : 4,000원/두
- 포획단 구성 : 염소협회, 염소 전문가, 가축방역 유경험자, 포획전문가 등으로 2~5명의 포획단 구성

※ 염소농가에서 예방접종을 동시에 원할 경우 공수의사 동원

다. 구제역 예방접종기구 지원

○ 사업목적 : 효율적인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시술자 안전 확보

○ 구제역 예방접종 기구

- 지원품목 : 원거리에서 소 축종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시술자 보호 목적으로 사용

* 지원단가 : 260,000원 정도/개

- 지원대상 : 지자체, 공수의사, 생산자 단체, 축산농가 등

※ 모든 백신접종은 1두 1침을 기본으로 사용토록 지도

○ 예방약 가온기

- 지원품목 : 냉장보관중인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전 적정온도(20~25℃)로 가온하기 위한 기구 공급

* 지원단가 : 130,000원 정도/개

- 지원대상 : 양돈농가별 1~2개

5. 세부실시요령

사업계획 시달 (도 → 시군)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농가 확정(시·군)

→ 사업추진 (시·군 → 농가 등)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시·군 → 도)

6.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실적

일련번호	농가 내역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두수)							지원품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포획비 포함) 지원실적

번호	축주현황			접종결과		시술자	비고
	축주명	주소	사육두수	접종대상	접종두수		

□ 구제역 예방접종기구 공급실적

세부사업명	구입량	지원단가	구입품목	지원대상	비고
계					

□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정산보고

(단위 : 두, 개,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계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두, 개,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완화제	시술비	포획비	예방접종 기구	가온기	계	도 비	시·군비	
계	800,000	134,500	29,500	100	200	972,000	291,600	680,400	
청주시	139,000	27,000	5,200	27	36	186,370	55,911	130,459	
충주시	96,000	18,000	7,800	11	24	140,860	42,258	98,602	
제천시	44,000	11,000	3,200	8	10	74,700	22,410	52,290	
보은군	50,000	18,000	900	13	12	97,040	29,112	67,928	
옥천군	32,000	11,000	1,000	8	8	61,680	18,504	43,176	
영동군	33,000	8,000	1,500	5	8	51,230	15,369	35,861	
증평군	25,000	3,000	1,000	2	6	25,550	7,665	17,885	
진천군	154,000	9,000	1,100	6	38	97,720	29,316	68,404	
괴산군	98,000	11,000	4,200	8	24	98,340	29,502	68,838	
음성군	117,000	15,500	2,400	10	30	116,710	35,013	81,697	
단양군	12,000	3,000	1,200	2	4	21,800	6,540	15,260	

※ 사업비는 '15년 상반기 사업실적을 토대로 시군간 조정 예정

11.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제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황준영	행)3744 일)220-37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전염병 감염시 자체적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 하거나, 소량의 바이러스 감염시 피해예방 또는 항병력을 키우는 물질을 공급하여 질병예방과고품질, 생산성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자 함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120톤	600,000 (100%)	-	90,000 (15%)	210,000 (35%)	300,000 (50%)

○ 지원단가 : 5,000원/kg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지원대상 : 가금류 사육농가(닭, 오리, 메추리 등)

〈지원우선순위〉

① 동물복지 인증농가

② 강/하천 주변 양계(오리) 농가

③ 친환경 사육농가 및 방역교육 이수 농가

④ 축산업등록 농가

〈지원제외〉

① 기업 직영 가금류 사육농가

②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6개월 이내에 소독 미실시 농가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농가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중 집중 공급(4월, 9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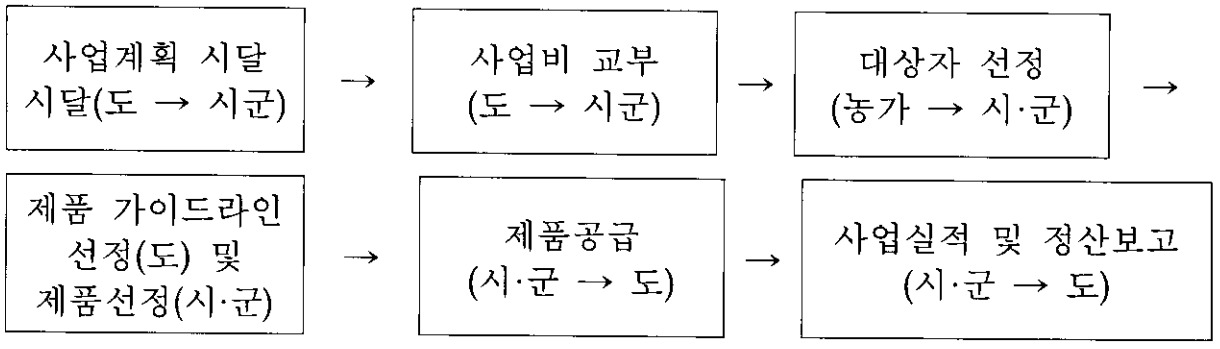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면역증강물질

<유기산, 중성지방산, 올리고당, 천연물 추출물, 효소제, 유산균 면역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다당체 등 EU에서 정한 항생제 대체제>

※ 농가당 최대 2,000kg이내 까지 지원, 초과분은 100% 자부담실시

- AI 유행시기(4월 이전, 10월 이후)를 감안 희망농가에 한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000kg이내 지원 가능

5. 세부실시요령



〈 도 〉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대상 농가 선정

- 협의회 구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축협, 농가대표 등

- 협의내용 : 제품선정, 자부담 납부방법 및 구매방법 등

※ 동물용의약품은 친환경인증농가에 사용시 인증 취소사유가 되므로 제품선정에 유의

○ 대규모 농가 편중지원 예방(최대 2톤까지만 지원)

○ 조류인플루엔자 면역증강물질 공급 후 대장작성 보관(서식 1)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식 2)

6.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5.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AI 면역증강물질 정산보고

(단위 : kg,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합계	모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합계	모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합계	모비	시군비	자담
계															

□ AI 면역증강물질 공급실적

축종	축 주				공급내역		비고
	성명	주소	사육수수	연락처	공급제품	공급량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kg,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20,000**	**600,000**	**90,000**	**210,000**	**300,000**	
청주시	12,600	63,000	9,450	22,050	31,500	
충주시	21,000	105,000	15,750	36,750	52,500	
제천시	5,400	27,000	4,050	9,450	13,500	
보은군	8,000	40,000	6,000	14,000	20,000	
옥천군	7,200	36,000	5,400	12,600	18,000	
영동군	6,400	32,000	4,800	11,200	16,000	
증평군	2,800	14,000	2,100	4,900	7,000	
진천군	12,000	60,000	9,000	21,000	30,000	
괴산군	10,000	50,000	7,500	17,500	25,000	
음성군	32,000	160,000	24,000	56,000	80,000	
단양군	2,600	13,000	1,950	4,550	6,500	

12.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동물방역	김재승	행)3743 일)220-37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전염병 전파 전염원의 농장단위 차단방역

○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기반 강화

2.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3. '15년 지원계획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담
100개	400,000 (100%)	-	60,000 (15%)	140,000 (35%)	200,000 (50%)

○ 지원단가 : 4,000천원/개소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군

2.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축사면적 300㎡ 이상농가(300 ~ 1,000㎡이하 사육농가 우선지원)

○ 대상축사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

3. 사업기간

○ 사업기간 : '15. 1 ~ 12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장출입 소독시설 신규 또는 노후시설 교체

○ 사업비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5. 세부실시요령

○ 도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
-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확인 및 지원우선순위 적용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적정 제품이 구입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겨울철 동파 예방시설 필수 및 대인소독기능 권장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철저

○ 농 가

- 사업 참여 신청서 해당 시군에 제출
- 제품 선정 후 구입증빙 서류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6.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 사업 완료보고

- 시장·군수는 2016. 1.30까지 보고서식에 의거 사업실적 제출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정산보고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예산					집행실적					집행잔액				
	사업량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업량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공급내역

사업 대상자		축 종	사육현황	축사면적 (㎡)	사 업 비(천원)			
성명	주소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1>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 신청서

□ 농가현황

성 명		연락처	집) 핸)
주 소			
사업장주소		축사면적	㎡
축 종		사육현황	

□ 사업신청내역

업 체 명	시설내역	소요사업비
		천원

상기와 같이 농장출입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 ○ 시장·군수 귀하

<별표 1>

시군별 사업비 내역

(단위 : 호, 천원)

구분	사업량	예 산 액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100**	**400,000**	**60,000**	**140,000**	**200,000**	
청주시	21	84,000	12,600	29,400	42,000	
충주시	12	48,000	7,200	16,800	24,000	
제천시	9	36,000	5,400	12,600	18,000	
보은군	12	48,000	7,200	16,800	24,000	
옥천군	10	40,000	6,000	14,000	20,000	
영동군	5	20,000	3,000	7,000	10,000	
증평군	3	12,000	1,800	4,200	6,000	
진천군	6	24,000	3,600	8,400	12,000	
괴산군	9	36,000	5,400	12,600	18,000	
음성군	9	36,000	5,400	12,600	18,000	
단양군	4	16,000	2,400	5,600	8,000	